

# 地域共同體의 法規範

— 中文 일부지역의 慣習·法意識·自治規範을 중심으로 —

韓 三 寅\*

目 次	
I. 序 說	IV. 自治規範
II. 慣習實態	V. 結 語
III. 法意識	

## I. 序 說

사회적 존재(Social being)인 사람은 他人과의 만남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하여 規制된 社會體系에 동참하지 않으면 안되는데,<sup>1)</sup> 이처럼 그 사회질서를 유지키 위한 행위의 규칙 또는 樣式을 우리는 法(規範)<sup>2)</sup>으로 인식할 수 있다.

무릇 「만든 법」으로서의 成文法과 「만들어진 법」으로서의 慣習 내지 慣習法을 대비할 때 후자가 살아있는 법(lebendes Recht)<sup>3)</sup>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것은 성문법은 文字로 씌어진 條文으로 되어(law in book) 우리 곁을 떠나 법전속에만 潛在해 있다가 구체적으로 犯罪가 발생하거나 債務者의 債務不履行을 법원에 호소해 오는 債權者가 있을 때에

\* 濟州大學校 法政大學 法學科 副教授

- 1) 拙稿, “家族慣習에 관한 研究”, 金容漢教授 華甲記念論文集「民事法學의 諸問題」, 博英社, 1990, p. 587.
- 2) D. L. Sills (ed.), *International encyclopaedia of the Social Sciences*, vol. 11, The Macmillan Co. & The Free Press, 1979, p. 204.
- 3) Ehrlich에 의하면 法典속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생활 자체를 지배하는 법으로서의 관습·관행이야말로 살아있는 법이라고 한다.  
Ehrlich,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Sociology of Law*, (1936), 1975, p. 493.

사회현실에서 顯在化하는 반면에 관습법은 오랜 세월에 걸쳐 행해져 온 지역(마을共同體)구성원의 삶의 秩序로서 실제생활을 규율하는(law in action) 규범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지역공동체를 지탱해 온 祖上들의 삶의 질서로서의 慣習(法)은, 어떤 사회에 있어서의 법 또는 법체계에 대한 태도·가치관·의견을 지칭하는 法文化<sup>4)</sup>라든가 어떤 行動樣式을 <법이다> 또는 <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의식으로서의 法意識<sup>5)</sup>과 함께 法の 現實適合性·實効性의 문제와 직결된다 할 수 있다. 바로 여기에 社會的 實在法인 慣習과 意識에 대한 實態把握(調査)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本稿는 西歸浦市 中文洞 大浦洞 穡達洞 河源洞 廻水洞 月坪洞이라는 6개의 법정동을 대상으로 하는 中문<sup>6)</sup> 일부지역공동체에서 기능해 왔고 또한 현실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社會的 產物로서의 法規範(慣習·法意識·自治規範)을 발견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고에서는 이 지역공동체의 법규범을 단순히 記述(describe)하는데 그칠 뿐 그 객관적 과학적 분석으로서의 說明(explan)은 가급적 하지 않았다.

調査方法으로는 法社會學的 接近方法(Scio-legal Studies)의 일반적인 것들, 즉 觀察(observation), 인터뷰(interview), 設問調査(survey) 중에서 주로 인터뷰와 설문조사에 의한 社會調査의 方法<sup>7)</sup>을 취하였<sup>8)</sup>을 뿐 아니라 民族學的 法學(ethnologische Jurisprudenz)의 視角에서 쓰여졌음을 밝힌다.

4) Henry W. Ehrmann, *Comparative Legal Cultures*, 1976, pp.8-9.

5) 廣中俊雄, "現代の法意識", 「法社會學論集」, 東京大學出版部, 1976, p.138.

6) 옛 중문면 관내 11개 마을(理)은, 옛 서귀읍이 「市設置와 郡管轄地域 變更에 관한 法律(法律 제3425호)」에 의해 1981년 7월 1일부터 西歸浦市로 승격되면서, 서귀포시에 편입되어 중문동, 대천동, 예래동의 3개 행정동으로 그 모습을 바꾸게 되었다. 이 중 중문동(행정동) 1·2·3통을 보통 중문동(법정동)으로, 행정동으로서의 중문동 4·5·6통은 각각 대포동(법정동, 이하 같음), 하원동, 회수동으로 통칭되고 있다. 또한 대천동(행정동) 1·2·3통을 강정동(법정동, 이하 같음)으로, 대천동 4·5·6통은 각각 용흥동, 월평동, 도순동으로 불리고 있으며, 예래동(행정동) 1통을 색달동(법정동, 이하같음)으로, 예래동 2·3통과 4·5통은 각각 상예동과 하예동으로 불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옛 중문면은 3개의 행정동과 11개의 법정동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調査는 집필자와 집필자로부터 調査事項과 그 방법을 익힌 數名의 法學徒에 의해 1991년 6월부터 1992년 7월 사이에 행해졌다.

8) 本稿가 발견하려고 한 慣習은 提報者(informant)들의 연명에 비추어 볼 때 대체로 解放前後時期의 관습으로 보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慣習은 當代의 正義觀·倫理觀·社會經濟的인 諸般 與件에 따라 변할 수 밖에 없는 屬性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본고가 擧示한 관습중에는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것이다. 拙稿(1990), p.589.

## II. 慣習實態

### 1. 司法慣習(紛爭의 解決方式)

#### 가. 個別的인 慣習調查內容

중문일부지역에 있어서 마을(親族)내에서 또는 마을과 마을 사이에서 다툼이 생겼을 때, 그 紛爭解決의 구체적 방법 내지 절차는 무엇이었는가?

A-1: 中文里(現 西歸浦市 中文洞 1·2·3統)

친족간에는 門中會가 분쟁해결의 주체였고 동네안에서의 다툼은 동네의 意思(住民의 輿論)로 분쟁해결이 가능하였다. 문중이나 동네회의는 강제성은 없었으나, 그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소외(따돌림)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그 결정에 따랐다 한다. 마을간 분쟁은 우선 마을 유지 등을 통한 仲裁에 의해 그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보통이었고, 이러한 방법이 여의치 못할 경우 궁극적으로 法廷解決에 의존하였다.<sup>9)</sup>

B-1: 大浦里(現 西歸浦市 中文洞 4統)

친족내 분쟁은 門長·宗孫會議에서 해결하였다. 마을내 또는 마을간의 분쟁은 鄕長 등의 前任者들이 모여서 회의로 결정하였다 한다.<sup>10)</sup>

C-1: 穡達里(現 西歸浦市 예래동 1統)

마을내 또는 마을간의 분쟁은 部落村長에게 告訴가 들어오면 鄕會를 열어 그 결정에 따랐다 한다.<sup>11)</sup>

D-1: 河源里(현 서귀포시 중문동 5統)

일가의 분쟁은 家門 어른들의 중재에 의해 해결하였고, 마을내의 사소한 다툼은 마을유지들이 조정·중재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한다.<sup>12)</sup>

E-1: 廻水里(현 서귀포시 중문동 6統)

마을간의 분쟁은 마을의 대표를 뽑아 화해하는 것이 보통이었으며, 여의치 못할 경우

9) 이상의 提報者: 中文洞居住 73세의 고신규씨와 같은 동네에 사는 71세의 이희옥씨로서 이들은 大靜鄕校를 수학하였다.

10) 이상의 提報者: 大浦洞居住 70세의 이지환씨로서 漢學을 하였다.

11) 이상의 提報者: 穡達洞居住 72세의 허경화씨로서 이분도 漢學을 하였다.

12) 이상의 提報者: 河源洞居住 58세의 고용칠씨와 그의 母親(75세).

법에 의해 처리하였다 한다.<sup>13)</sup>

F-1 : 月坪里 (현 서귀포시 대천동 5統)

친족간의 財産紛爭은 집안 年長者의 仲裁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보통이었고, 마을내 분쟁시는 마을자치규약에 따라 해결했으나 그 규약의 효력이 상실하면서 마을유지들의 중재로 해결해 나갔다 한다.<sup>14)</sup>

#### 나. 總括的 考察

이상에 나타난 事實을 토대로 하여 중문일부지역에서 파악(발견) 되는 紛爭解決의 司法的 慣習 內容을 整理·分析해 보기로 한다.

친족간에는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마을주민 상호간의 경우도 그렇다) 또는 마을과 마을 사이에서 다툼이 생겼을 때 해결방식은, 紛爭事件의 대부분을 法廷에서 해결하는 오늘날의 분쟁해결의 방식과는 달리, 우선적으로 門中(會議)이나 小集團(마을共同體)의 지도자인 마을유지 등에 의해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常例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집안, 문중, 또는 마을共同體내에서 발생한 웬만한 범죄나 분쟁을 자체 내부적으로 풀어 나가는 紛爭解決機能은 訟事를 꺼리고 讓步나 和解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韓國人의 態度나 價値觀<sup>15)</sup>의 구체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司法慣習은 法院所在地까지의 거리가 멀 경우 생기는 비용부담과 불편, 법정 등에서 당하는 여러가지 수모나 불유쾌한 대우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사건이나 분쟁해결을 위하여 官이나 그밖에 외부세력을 끌어들이었을 경우 집안이나 문중 또는 마을 전체가 입게될지도 모르는 제반피해를 막으려는 태도와 相關關係가 있다<sup>16)</sup>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어떻든 自律的 紛爭解決의 司法慣習은 人的(personal)인 접근을 강조하는 입장(人情主義)에 놓여있는 것으로서 人的 紐帶關係를 중시하는 特殊主義(particularism)라든가 마을共同體 상호간의 協力(總和團結)을 중시하는<sup>17)</sup> 견지에서는 당연한 귀결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법관습은 비단 중문일부지역에만 溫存해 있었던 것은 아니고 濟州社會를 포함한 傳統社會 어디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 원초적인 法現狀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떻든 앞에서 음미한 自治的 統制機能으로서의 司法慣習은 복잡 다양한 오늘날의 사회현실에 비추어 볼 때 중문일부지역에서도 서서히 退化·變化해 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慣習(法)은 사회적 산물이기 때문이다.

13) 이상의 提報者 : 廻水洞居住 양달화(91세), 오하옥(81세), 이동기(86세)씨.

14) 이상의 提報者 : 月坪洞居住 이성옥(63세), 임옥순(61세)씨.

15) 崔大權, 法과 社會, 서울大學校山版部, 1992, p. 22 참조

16) 上揭書, pp. 22~23 참조

17) 上揭書, p. 108 참조

## 2. 民事慣習(家族慣習)

여기에서는 民事慣習의 樣態중에서 家族慣習을 중심으로 하여 婚姻, 分家, 財産相續, 祭祀相續, 債務의 承繼, 祭位土(祭物田 또는 祭越田)와 墳墓의 소유권의 귀속 등을 파악해 보기로 한다.

### 가. 婚 姻

#### (1) 個別的인 慣習調査內容

누구의 의사가 혼인을 성립시키는가의 시각에서 求婚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관습의 실태를 중점적으로 파악한 다음 婚姻圈, 同姓同本 사이의 婚姻의 有効與否 등에 관한 것을 파악해 보기로 한다. A地域에서 F地域에 이르는 조사내용을 요약하여 擧示하면 다음과 같다.<sup>18)</sup>

#### A-2

- ① 兩家父母 등 집안 어른들의 생활권 내에서 접촉하여 그 의사여하에 따라 혼인의 상대방이 선정되었다. 대부분 혼인당사자의 의사는 무시되었으며, 집안의 가풍·신분이 중시되었다. 일단 상대방이 정해지면 신랑측 부모가 상대방의 집을 방문하거나 仲介人을 통해 許婚을 청하였다. 상대방이 승락하면 사주를 보게되고 궁합이 맞으면 이를 서로 교환하게 되며(궁합이 맞지 않으면 혼사는 결렬되었다), 이것은 약혼식과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되어 이후로 혼인을 전제로 하는 준비가 행해졌다 한다.
- ② 계급적 신분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특히 문관과 벼슬(지방)을 지낸 집안이 우대되었다. 재산가는 신분상승을 하기도 하였다.
- ③ 동성동본 사이의 혼인은 절대적으로 불가하였다 한다.

#### B-2

#### C-2

- ① 兩家父母(집안어른)에 의해 상대방을 전혀 모른채 혼인당사자는 정해졌다.
- ② 특별한 제한없이 제주섬 전역에서 행해졌다 한다.
- ③ 동성동본간의 혼인은 불가하였다 한다.

#### D-2

- ① 주로 아버지가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婚事를 결정(定婚)하였고, 집안(가문)을 중시하였다 한다.

18) 이하의 本稿에서 말하는 A에서 F에 이르는 地域은 앞에서 擧示한 <司法慣習>에서의 地域과 동일하며, 提報者들도 同一人이다.

- ② 호근·동홍·서흥리가 혼인권이었으나, 이들 지역의 경제사정이 나아지면서 예례리 대포리 등지에서 혼처를 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다.
- ③ 同姓同本 不婚의 원칙이 지켜졌다 한다.

E-2

- ① 혼사는 집안어른끼리 중매로 결정하는 경우가 보통이었고, 본인(남자)이 여자집에 가서 신부감으로 마음에 들면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었다 한다.
- ② 같은 부락(인근 부락)에서 혼처를 구하는 것이 通例였고, 같은 동네에서 혼처를 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 ③ 동성동본간의 혼인의 사례는 없었다 한다.

F-2

- ① 부모의 의사에 따라 당사자가 상대방의 얼굴도 모른채 혼인하였다.
- ② 옛 중문면 全域에서 婚處를 구하였다.
- ③ 동성동본 사이의 혼인은 不可하였다 한다.

(2) 總括的 考察

우선 婚姻成立의 방식에 있어서는, 兩家의 主婚者 사이의 婚姻意思의 合意에 의해 成婚이 되는 철저한 代諾婚이 행해졌음을 알 수 있으나, 이것은 근대시민사회가 형성되기 이전 개인의 自由人格이 부정된 사회나 시대에 있어서는 하나의 보편적 현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代諾婚의 婚姻慣習은 이 지역만의 특유한 모습은 아닌 것이다.

求婚은 男家에서 女家에로 행해지는 것이 보통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때 男子의 부모는 인근에 수소문하여 건강하고 일 잘하며 인물 좋고 가문에 흠이 없으면 좋은 신부감으로 여겼다. 한편, 女家가 男家의 求婚을 受諾함(請婚을 해음)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유교가풍이 풍비했던 朝鮮朝末까지는 班常階級意識에 바탕을 둔 계급적 內婚制(Endogamy)의 習俗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며, 점차 家門·經濟力·人物됨됨이 등을 참작하여 婚事를 결정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철저한 仲媒婚이 행해졌고, 宮습이 혼사결정에 핵심적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同姓同本不婚의 慣習이 철저히 행해졌음을 알 수 있으나, 이것도 이 지역만의 특유한 모습은 아니다.

제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婚姻圈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는 것인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近處婚(部落內婚, 隣近部落婚)이 행해졌던 濟州社會의 보편적 현상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새겨 무방할 것이다.

나. 分 家

(1) 個別的인 慣習調查內容

子女의 婚姻시에 分家는 當然한 것이었는가?

A-3

장남은 혼인과 더불어 최소한 박거리(별채)로 분가하여 독립한 경제생활을 영위해 나갔다. 차남 이하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집안이면 독립하였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부모와 同一家屋에서 共生하기도 하였다. 대개 부모 나이 70세가 되면 祭祀相續과 함께 안거리(본채)를 長男에게 물려주고 부모는 박거리로 옮겨가 독립생활을 영위해 나갔다 한다.

B-3

C-3

자녀는 혼인과 더불어 대부분 分家하였다 한다.

D-3

E-3

F-3

혼인하게 되면 당연히 분가하였다. 특히 장남이 혼인하였을 때는 장남이 박거리에, 부모는 안거리에 살다가 부모가 거동이 불편할 때 쯤 되면 안거리와 박거리를 서로 바꾸었다 한다.

(2) 總括的 考察

이상의 事實에 미루어 볼 때 이 지역에 있어서는(濟州社會 全域이 그러하다) 次男 이하의 경우는 물론 비록 長男이라 하더라도 혼인하게 되면 조만간 분가하여 독립한 生計를 영위하는 경제주체로 되었다. 이것은 家父長制 家族制度의 理念的 性格의 하나인 家族의 隸屬性·集合性의 排除임과 동시에 그 家族類型이 核家族임을 말해준다.<sup>19)</sup>

한편 부모는 자녀들이 성장할 때까지는 안거리에서 생활해 나가면서 長成한 子女를 차례차례 別居시켜(혼인한 長男을 박거리에 別居시킨다) 末子까지 혼인하게 되면 「안거리」는 長男에게 移讓해 주고 「박거리」로 옮겨서<sup>20)</sup> 老夫婦만의 새로운 生活을 영위해 나가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分家主義 家族慣習의 形成根據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것은 濟州社會 특유

19) 拙稿(1990), pp. 596-597.

20) 이것은 소위 父의 家長權은 長男에게, 母의 家婦權(Schlüsselgewalt)은 며느리(子婦)에게 移讓된 의미를 갖는다.

의 生存環境에서 우러나온 경제적 自活性, 儒敎的 父母中心의 價値觀의 약화에서 배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sup>21)</sup>

#### 다. 祭祀相續

##### (1) 個別的인 慣習調查內容

중래 우리나라의 慣習上의 相續에는 祭祀相續, 戶主相續, 財産相續의 세가지가 있다.<sup>22)</sup> 祭祀相續은 奉祀者, 즉 先祖의 祭祀를 侍奉하는 者의 지위를 承繼하는 것으로 禮에서 유래한 宗法制에 바탕을 둔 특유한 제도이다.

이제 祭祀相續의 分擔이 행해졌는지 여부, 忌祭祀時에 祖上의 紙榜을 모시는 樣態 등에 着점을 맞추어 中문일부지역에 있어서의 이에 관한 慣習內容을 파악해 보기로 한다.

##### A-4

제사는 4代祖까지 奉行하였으며 主祭者는 長子·長孫이 보통이었다. 父와 長子가 제사를 나누어 奉行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父가 70세 정도가 되면 祭越田을 長子에게 移讓하면서 祭祀도 물려주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한다. 兄弟(親族)간의 제사분담은 제월전의 상속이 없는 한 행해지지 않았다 한다. 忌祭祀時 考位와 妣位는 合位했다.

##### B-4

제사주제자는 宗孫으로서 4代祖까지 奉行하였고, 長子 위주여서 제사를 나누어 奉行하거나 兄弟(親族)間 제사분담은 원칙적으로 행해지지 않았다 한다. 考位와 妣位는 合位하였다 한다.

##### C-4

宗孫이 4代祖까지 제사를 奉行하며 5代祖부터는 終祭하였다. 父와 長子間에 제사를 나누어 奉行하지 않았으며, 제사는 長子가 책임졌고 장자가 극빈일 경우 次子가 부모 제사 중 어느 한 분 제사를 奉行하는 경우가 있었다. 忌제사시 考位와 妣位는 한 紙榜에 모신다고 한다.

##### D-4

제사는 4代祖까지 지내며 父(長子, 長孫)가 主祭하였다.

父와 長子가 제사를 나누어 奉行하지는 않았다 한다. 형제항렬의 경우 長子만 제사를

21) 拙稿(1990), p. 599.

22) 李相範, "韓國에 있어서의 財産相續에 관한 舊慣習", 裁判資料 제7집 「慣習實態調查(1)」, 法院行政處, 1980, p. 135.



봉행하며, 次子등은 몇년에 한 번씩 제사를 차려서 長子덕에서 봉행하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었다. 기제사때 考位와 妣位를 合位하였다.

E-4

4代祖까지 奉祀하였으며 長子가 제사를 주제하였다.

父와 長子가 제사를 나누어 봉행하지는 않았다 한다. 장자가 제사를 봉행하는 것이 원칙 이었고, 父母祭祀時 형제간에 분담하는 경우는 있(었)다. 紙榜은 합위하였다.

F-4

위의 경우와 대체로 같았다. 다만 父母와 長子間에 제사를 나누어 奉行하지는 않았으면 서도 간혹 祖父母祭祀는 父가 증·고조부모 제사중 어느 하나를 長子가 봉행하는 경우는 있었다 한다. 考位와 妣位는 같은 紙榜에 썼다.

(2) 總括的 考察

調査結果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祭祀의 分擔이 행해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기에 따라서는 가령 한 家門에 있어서 혼인한 長子의 생활이 비교적 안정되고 부모가 老衰하게 되면(대체로 70세 정도) 부모는 그들이 갖고 있던 家長權·家婦權과 함께 모든 제사를 長子에게 이양하고, 이 때에 祭祀의 경제적 기반 내지는 祖上崇拜라는 특정목적에 바쳐진 財産으로서의 祭越田도 長子에게 계승시키며 장자의 집(祖上傳來의 家屋)에서 제사를 奉行하는 것이 보통이었 기 때문에 이 지역(濟州社會의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의 제사조직은 長子中心(嫡長子繼承主義) 으로 새길 수도 있다. 그러나 형제 사이에서 祭越田을 나누어 繼承할 경우에는 그 승계문에 따른 祭祀分擔이 행해졌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分擔制 祭祀慣習이 溫存해 왔음을 말해준다 할 것이며, 이것은 兄弟 사이의 平等意識의 구체적 발로라는 법적 의미를 갖는 다 할 것이다.

한편 忌祭祀時 紙榜의 樣態를 보면, 동일한 紙榜에 考位와 妣位를 나란히 쓰고 있는데, 이것은 夫婦同權(兩性平等)이라는 意識構造의 표현으로서의 법적 의미를 갖는다 할 것이다.

라. 財産相續

(1) 個別的인 慣習調査內容

社會制度로서의 相續은 각시대와 각사회 의 특수성을 기초로 하는 社會의 要求와 文化意識 속에 존재하는 정당성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相續制度는 제1기(古代氏族共同體社會)의 祭祀相續, 제2기(中世封建社會)의 身分相續의 단계를 거쳐 제3기(近代資本主義社會)의 財産相續으로 발달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제 상속의 형태(獨占相續·共同相續), 相續分, 出嫁女の 財産相續權 有無(여자가 혼인하여 他家에 있는 이상 親庭의 財産相續人이 될 수 있는지 與否) 등에 초점을 맞추어서 종래 이 지역에 있어서의 財産相續에 관한 慣習內容을 살펴보기로 한다.

## A-5

出嫁女の 재산상속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으나(최소한 親家의 代를 이을 男子가 없으면 養子를 들여 상속시키는 것이 보통이었으므로), 다만 친가재산이 넉넉한 경우에는 출가녀에게도 어느 정도의 재산상속이 허용되는 수가 있었다 한다.

先代물림재산(계월전 포함)은 대개 長男에게 獨占相續이 행해졌으나, 父母가 當代에 모은 재산은 次男 이하에게도 相續되어 갔으며, 이때 被相續人은 生前處分 또는 遺言으로 각 상속인이 받을 비율을 임의로 정할 수 있었다. 피상속인이 遺言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은 일단 장남에게 승계된 후 장남의 재량에 의해 次男이하에게도 분배되어 갔으며 그것이 형평(신의)에 어긋날 경우에는 門中會議를 통해 바로 잡았다 한다. 庶子의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았다 한다.

## B-5

出嫁女の 財産相續은 허용되지 않았다 한다.

共同相續이 행해졌으나, 상속분에 있어서는 長男이 우대되어져 상속재산의 반 이상을, 나머지를 차남이하가 나누어 갖는 것이 보통이었다. 嫡子에게만 재산상속이 행해졌으며 嫡子의 재량에 의해 庶子에게 분배되어 지기도 하였다.

## C-5

出嫁女는 祭祀相續 戶主相續 財産相續 그 어느 것도 인정되지 않았다. 공동상속이 행해졌으나 長男은 상속재산의 2/3정도를, 나머지는 次男이하에게 상속되는 것이 常例였다 한다.

庶子의 재산상속은 不可하였고 다만 嫡子의 意思에 따라 상속재산 중의 일부를 移讓받았다 한다.

## D-5

出嫁女の 財産相續權은 부정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피상속인(財主)의 재산은 대개 生前處分하였다(유언없이 사망하는 경우 재산분배에 따른 다툼이 생기는 경우도 허다하였다). 보통 長子가 재산의 반 정도를 나머지를 衆子이하가 均分分配 받았다(長子, 次子 뿐일 때는 長子가 재산의 2/3 이상을 받았었다).

遺言없이 男戶主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遺産은 일단 長子가 관리하면서 次子이하를 혼인

시켜 초가집을 지어 주는 등 長子가 父의 역할을 대행하였다 한다. 보통은 庶子도 장남일 때에는 長子權을 인정해 주었다 한다.

E-5

出嫁女의 相續權은 인정되지 않았다.

피상속인은 生前處分 또는 遺言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비율을 정할 수 있었고, 그 비율은 장자가 7할 정도를 분배받았다 한다. 상속인으로서 嫡子와 庶子가 있을 때 嫡子는 2/3이상을 庶子가 나머지를 상속받았다 한다.

F-5

술가너는 受贈者는 될 수 있어도 相續人은 되지 못했다. 피상속인은 생전처분으로 상속비율을 정할 수 있었으나 주로 장자 위주의 상속이 행해졌다 한다.

유언없이 男戶主가 사망하게 되면 유산전부를 長子가 관리·승계하면서 동생들을 혼인시키고 그때 次子이하에게 분배해 주었다 한다. 庶子의 財産相續權은 부정되었으나, 다만 훗이 들어와 모은 재산은 그 범위에서 庶子에게도 상속되었다 한다.

## (2) 總括的 考察

우선 예외적인 경우가 있기는 하였으나, 出嫁女는 出嫁外人이라 하여 親家의 재산은 婚資·生活家具(케탁, 칠기류, 간단한 식기류, 의복 등)로써 상속에 갈음되었을 뿐 여자의 재산상속권(戶主相續權 및 원칙적으로 祭祀相續權도 同一)은 인정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데, 이처럼 出嫁女의 財産相續權을 否定하는 관습은 被相續人이 男戶主일 경우의 상속재산을 祖業이 아니라 家産으로 파악하는 意識의 所産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調査內容이 밝혀주듯 종래 중문일부지역에 있어서(濟州全域이 그러하다) 財主(호주인 父 또는 寡母)의 소유재산이 直系卑屬에게 分紛되는 慣習樣態에는 生前處分에 의한 分財, 피상속인(財主)이 생존중에 상속재산의 分割을 지정하는 방법에 의한 分財, 이러한 처분이 없이 財主가 돌연 사망하는 경우에 비롯되는 法定相續의 세 가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共同相續의 경우에도 長子가 더 많은 相續을 갖게 되는 長子優待의 家風이 강하였던 것으로 새길 수 있다.

遺産分割時期(法定相續의 경우 그렇다)에 대해서는, 이를 명확히 밝힐 수 있는 資料가 없으나, 財主가 父 또는 寡母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3年喪을 마친 뒤에야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遺産으로써 喪葬費用·相續債務 등을 공제하는 清算의 절차를 밟은 후에야 相續財産(遺産)을 분할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庶子의 財産相續權이 대체로 否認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嫡庶差別意識이 비교적 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마. 債務의 承繼

(1) 個別的인 慣習調査內容

근대국가에 있어서의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死者(被相續人)에게 속하는 財産이 다른 일정한 生存者(相續人)에게 이양되는 재산상속만을 의미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제 債務의 承繼(상속인이 상속하여 戶主가 되면 遺産을 취득하지 않았어도 先代의 債務에 대하여 無限責任을 부담하는 慣習이 있었는지?)의 시각에서 중문일부지역에 있어서의 慣習內容을 파악해 보기로 한다.

A-6

어떤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범위내에서만 상속인이 책임을 지는 수도 있었으나, 대체로 戶主相續人인 長男이 無限責任을 졌다 한다.

B-6

長男이 無限責任을 부담하였으며, 當代에 해결하지 못하면 後代에까지 債務의 代물림이 행해졌다 한다.

C-6

부모의 債務는 子(孫)에게 까지 無限責任으로 이어졌다 한다.

D-6

보통 유언에 의해 부담하였으나, 그렇지 않아서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었다 한다.

E-6

상속인이 상속하여 호주가 되면 유산에 관계없이 先代의 債務를 갚는 것이 보통이었다 한다.

F-6

통상적으로 상속인이 無限責任을 졌다 한다.

(2) 總括的 考察

이상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호주상속을 한 자(長子)는 遺産이 없거나 또는 유산초과부분의 피상속인(父)의 채무도 辨濟해야 하는 無限責任을 부담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單純(承認) 相續의 慣習은 제주사회 全域에서 나타나는 공동된 현상으로서 「父債子還」이라는 종래 陸地의 舊慣習과도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sup>23)</sup>

23) "가족이 사망한 경우 유산상속인이 피상속인의 長男 또는 長孫과 같은 祭祀者인 때에는, 가령 피상속인이 소극재산 즉 채무만을 남긴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승계해야 함이 유산상속에 관한 古來의 관습이다"; 朝鮮高等法院, 1916. 12. 16 판결, <民錄> 제3권, p. 1018.

생각컨대 근대 이전의 모든 사회가 그렇듯 우리 先祖代의 제주사회도 권리의식보다는 도덕에 바탕을 둔 義務觀念이 앞서는 사회였을 것이므로, 先代로부터의 유산이 없어도 상속인이 先代의 債務를 이행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였고 그것은 바로 “孝行一致”와도 같은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인 當代에 完濟치 못하면 後孫에까지 승계되어져 이른바 “債務의 代물림”이 행해졌지만 그것은 도덕관념에 바탕을 둔 것이었기 때문<sup>24)</sup>에 消滅時効의 문제도 생기지 않았다. 한편 相續人인 자가 선대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는 地域住民들로부터 멸시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었음은 無限責任을 부담하는 배경으로서 지역 여론이 작용하였음을 의미해 준다.

바. 祭位土와 墳墓의 경우

(1) 個別的인 慣習調査內容

祭位土란 그곳에서 생산한 곡물로써 제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키 위해 마련한 토지를 뜻하며, 여기에는 祭位沓과 祭位田이 포함된다. 제주도의 경우에는 밭농사 중심이므로 祭物(越)田(掃墳田도 같은 의미이다)으로 불리어 진다. 어찌든 祭位土(祭物田)와 墳墓의 所有權은 누구에게 귀속되며, 祭物田은 長子에게만 상속되는 것인지?를 중심으로 한 慣習調査內容을 파악해 보기로 한다.

A-7

祭位土와 墳墓의 所有權은 祭祀奉行者인 長子에게 귀속되었으며, 祭越田인 경우도 제사 봉행자에게 상속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한다.

B-7

祭位土는 宗孫이 관리했으며(使用·受益을 포함한다), 賣買는 門中會議(친족회의)에 의해서만 가능하였다 한다. 제물전은 제사봉행의 댓가이므로 長子에게만 상속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C-7

祭位土와 墳墓는 長子에게 귀속하였고, 제위토의 매매는 불가하였으며 長子 임의대로 제위토를 처분하였을 때에는 그는 그 마을에서 살 수 없었다 한다. 제물전은 장자에게 상속되었다.

D-7

24) 제주 속담에 “산 때 안문 빗 죽영 가도 물어사 혼다”는 말은 債務의 完濟에 대한 법의식을 반영해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祭位土와 墳墓는 대개 長子(孫)에게 귀속되었으며, 따라서 제물전은 장자가 상속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장자가 제물전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門中規約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다.

E-7

장자(장손) 중심으로 상속·관리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F-7

祭物田과 墳墓는 長子(長孫)에게 귀속되었고(상속도 동일), 다만 次子가 제사봉행자일 경우에는 次子에게 祭物田이 移讓되는 경우도 있었다 한다.

## (2) 總括的 考察

이상의 事實에 미루어 볼 때 門中祭越田은 宗孫에게, 한 家門의 祭越田은 長子·長孫에게 承繼되는 것이 원칙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祭越田은 제사봉행의 댓가로서 주어지는 것이므로 次子 이하가 祭祀를 奉行할 경우에는 그가 祭越田을 관리하였음도 쉽게 짐작할 수가 있다.

### 사. 其他(特定地의 管理慣習)

경계가 없는 農耕地·草地 등의 管理慣習을 색달동을 중심으로 하여 파악·음미해 보기로 한다.

주로 마을 밖에 놓여있는 돌담을 닿아두지 않은 밭들을 無牆田이라고 했다. 무장전에서는 흙으로 만들어 놓은 독이 境界粟의 기능을 하였으나 밤낮으로 드나드는 牛馬로 부터 農作物(콩, 메밀, 보리, 山稻)과 풀(牧草)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장전의 地主들은 일종의 共同管理組織으로서의 '캐매기' 契를 매해 清明 후에 결성하였는데, 색달마을의 경우에는 「목산전」을 범위로 하는 1개의 組織體가 있었다 한다.<sup>25)</sup>

캐매기 契는 무장전내의 各土地 地主인 契員과 監官으로 구성되고 여기에 '서세'와 '캐주부'가 딸리어 졌다.

① 監官은 '캐매기' 契의 수장으로서 무장전의 도량과 各土地의 土質·收穫量 등을 잘 아는 마을의 유지가 契員 상호간의 호천에 의해 선정되어졌다. 감관은 '서세'와 '캐주부'를 선임할 수 있는 權限을 갖고 '캐꼭식'(무장전의 관리 댓가로서 캐주부에게 지급되는 보리, 쌀 등의 代替物)의 納付를 면제 받았었다.

25) 이상의 提報者: 穡達洞居住 72세의 허경화씨.

② 서세는 감관에 의해 선임된 자로서 무장전내의 地主名·地目·감관에 의해 결정된 무장전 各地主들이 납부해야 할 賦課의 量 등을 기재하는 일종의 文書作成 의무를 부담할 뿐이었다.

③ 賦課주는 대개 自己所有耕作地가 없는, 감관에 의해 선임된 자로서 가을 '캐매기' 수확 때까지 무장전을 牛馬로부터 보호·관리하는 賦課로서 감관에 의해 정해진 一定量의 賦課를 받았었다. 賦課주는 選任과 동시에 상당한 注意로써(오늘날의 法的用語로는 善管義務)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만약 이를 게을리 하여 수확기에 놓여 있는 賦課 등이 牛馬에 의해 滅失·훼손되게 되면 그 賦課인 賦課를 전혀 받지 못하였다 한다.

### Ⅲ. 法意識

여기에서는 중문일부지역가구주 219명을 대상으로 한, 몇가지 법적사항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중문일부지역주민들의 법의식(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이 지역 주민들의 規範的 價値觀으로서 法的 現實適合性에 대한 診斷이기도 하다)을 파악해 보기로 한다.

#### 1. 子女婚姻時 意思決定의 主體

<표 1> 혼인의 의사결정에 대한 家口主의 입장

단위 : 가구주(명)

구분 \ 동별	중문동	대포동	새달동	하원동	회수동	월평동	합계
부모의 의사	7 (17.5)	4 (12.9)	4 (13.3)	15 (37.5)	6 (15.4)	5 (14.3)	41 (19.1)
자녀의 의사	33 (82.5)	27 (87.1)	26 (86.7)	25 (62.5)	33 (84.6)	30 (85.7)	174 (80.9)
계	40 (100)	31 (100)	30 (100)	40 (100)	39 (100)	35 (100)	215 (100)

비고 : 1. '91년 7월 설문조사 자료임.

2. ( )안의 숫자는 계에 대한 구성비(%)임.

<표 1>은 "자녀의 혼인에 있어서는 누구의 의사가 더 중시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라는 물음에 대한 중문일부지역가구주 215명(이 지역 가구주들을 무작위로 抽出·設問調査를 하여 이에 응해준 자들)의 응답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따르면, 調查家口主의 80.9%가 자녀의 婚姻意思가 혼인성립의 제1의 요건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 民法의 입장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事實은 중문일부지역가구주의 거의 대부분이 혼인당사자 본인의 의사의 합의를 의해 혼인이 성립하는 것으로 새기는 雙方行爲的 婚姻(共諾婚)意識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새길 수 있으며, 따라서 앞의 婚姻慣習에서 파악되어진 종래 이 지역(제주사회 全域)에서 溫存하였던 代諾婚의 양식은 오늘날에는 거의 자취를 감춘 것으로 보아 무방할 것이다.

## 2. 同姓同本間의 婚姻 可能與否

〈표 2〉 동성동본간의 혼인 가능여부에 대한 가구주의 입장

단위 : 가구주(명)

구분 \ 동별	중문동	대포동	색달동	하원동	회수동	월명동	합계
불가하다	24 (60)	26 (74.3)	12 (40)	19 (47.5)	29 (74.4)	30 (85.7)	140 (63.9)
혈족이 아니면 가능하다	16 (40)	9 (25.7)	18 (60)	21 (52.5)	10 (25.6)	5 (14.3)	79 (36.1)
계	40 (100)	35 (100)	30 (100)	40 (100)	39 (100)	35 (100)	219 (100)

비고 : 1. '91년 7월 설문조사 자료임.

2. ( )안의 숫자는 계에 대한 구성비(%)임.

〈표 2〉에 의하면 중문일부지역가구주 219명 중의 63.9%인 140명이 동성동본사이의 혼인은 불가하다고 보는데 비해, 79명(36.1%)은 혈족이 아니면 가능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미루어 볼 때 중문일부지역가구주의 절반 이상은 同姓同本사이의 혼인은 불가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물론 앞의 婚姻慣習에서 吟味한 同姓同本不婚의 慣習은 그대로 溫存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입장은 우리 民法의 태도에 부합하는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동성동本不婚의 원칙을 규정한 民法 § 809 ①에 대해서는 그 前近代性, 不合理性, 非傳統性의 지적과 더불어 종래부터 改正論議가 활발한 편임을 고려할 때, 혈족이 아니면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 36.1%를 차지하고 있음은 이 지역주민들이 비교적 進步的인 法意識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색달동, 하원동의 경우 더욱 현저하다).



### 3. 財産相續과 出嫁女の 相續權

〈표 3〉 재산상속에 대한 가구주의 입장

단위 : 가구주(명)

구분		동별		중문동	대포동	색달동	하원동	회수동	월평동	합계
		중문동	대포동							
재산상속	장남 단독상속	1 (2.5)	1 (2.9)				2 (5)	2 (5.1)		6 (2.7)
	자녀공동상속 (단, 장남우대)	24 (60)	20 (57.1)	13 (43.3)	32 (80)	21 (53.9)	27 (77.1)			137 (62.6)
	자녀균분상속	15 (37.5)	14 (40)	17 (56.7)	6 (15)	16 (41)	8 (22.9)			76 (34.7)
계		40 (100)	35 (100)	30 (100)	40 (100)	39 (100)	35 (100)			219 (100)
출가녀	상속 허용	23 (57.5)	22 (62.9)	16 (53.3)	22 (55)	21 (53.8)	16 (45.7)			120 (54.8)
	상속 불가	17 (42.5)	13 (37.1)	14 (46.7)	18 (45)	18 (46.2)	19 (54.3)			99 (45.2)
계		40 (100)	35 (100)	30 (100)	40 (100)	39 (100)	35 (100)			219 (100)

비고 : 1. '91년 7월 설문조사 자료임.

2. ( )안의 숫자는 계에 대한 구성비(%)임.

〈표 3〉은 가구주와 同一家籍內에 있는 子女의 재산상속의 경우 ①장남 단독상속, ②공동상속이나 장남은 우대, ③균분상속)와 出嫁女の 相續權 인정여부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이에 따르면, 첫째 재산상속에 있어서는 가구주 219명 중의 62.6%가 재산상속은 자녀가 共同相續하고 다만 長子는 相續分에서 優待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34.7%는 子女의 均分相續이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것은 앞에서 음미한 재산상속관습의 경우와 대체로 비슷하고, 따라서 재산상속의 경우 長子優待의 相續慣習은 여전히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長·次男의 구별없이 均分相續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우리 民法의 태도와는 괴리가 있는 것이다. 둘째, 출가녀의 상속권의 경우 가구주의 54.8%가 시집간 딸도 親家의 相續權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앞에서 음미한 慣習實態 把握의 경우와는 다르지만(그 수치를 신뢰할 경우 그렇다), 남녀·기혼·미혼을 가리지 않고 均分相續을 인정하는 民法의 태도에는 부합하는 것이다.

## 4. 債務의 承繼

〈표 4〉 채무의 승계에 대한 가구주의 입장

단위 : 가구주(명)

구분 \ 동별	중문동	대포동	색달동	하원동	회수동	월평동	합계
자식이 갚아야 (單純承認)	23 (57.5)	24 (68.6)	17 (56.7)	19 (47.5)	20 (51.3)	22 (62.9)	125 (57.1)
안 갚아도 된다	2 (5)	1 (2.9)	.	.	1 (2.6)	.	4 (1.8)
상속재산의 범위내에서 갚아야(限定承認)	15 (37.5)	10 (28.5)	13 (43.3)	21 (52.5)	18 (46.1)	13 (37.1)	90 (41.1)
계	40 (100)	35 (100)	30 (100)	40 (100)	39 (100)	35 (100)	219 (100)

비고 : 1. '91년 7월 설문조사 자료임.

2. ( )안의 숫자는 계에 대한 구성비(%)임.

부모가 남긴 채무(이른바 債務의 承繼)에 대한 가구주의 응답결과를 나타낸 〈표 4〉에 따르면, 가구주의 과반수이상(57.1%)이 先代의 債務는 자식이 갚아야 한다는 單純(承認)相續의 의식이 강함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앞에서 파악되어진 慣習實態와 같은 것으로서 민법(제1005조)의 태도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한편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해야 할 것으로 인식하는 限定承認의 입장은 41.1%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財産關係에 대한 이 지역주민들의 合理性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새길 수 있다.

## IV. 自治 規範

앞에서 우리는 이 지역에서 기능해 왔던 오랜 세월동안 반복되어 행해진 규범의 樣態로서의 慣習(法)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민들의 규범의식의 몇 개의 양태들을 살펴 보았거니와, 여기에서는 이 지역주민들의 自治規範의 一形態로 볼 수 있는 공동목장조합 입회관계와 공동어장의 입어관계 등을 중심으로 하여 파악해 보기로 한다.

## 1. 共同牧場組合 入會關係

### 가. 中文(里)共同牧場組合

中文里共同牧場組合 定款을 중심으로 하여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보기로 한다. 全 4章 本文 23條 附則 4條로 되어있는 組合定款의 分析을 통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 (1) 조합의 공동목장구역
  - 설립 당시인 1931년 10월 21일 중문리 산 2번지의 조합자산으로 등재된 24필지 525, 360평
- (2) 조합의 설립목적
  - ① 목장의 건전한 발전과 축산기술의 보급
  - ② 조합원의 소득 증대 도모
- (3) 조합의 사업
  - ① 공동목장 운영의 기획과 조정
  - ② 관리인의 선정
  - ③ 목장의 개간과 목초개량
  - ④ 축우마의 병충해 공동방제
  - ⑤ 종축우의 육성과 구입
  - ⑥ 축산기술의 보급
  - ⑦ 기타 본 조합의 목적달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4) 조합원의 자격
  - ① 창립시 출자하여 조합원 명부에 등재된 자
  - ② 일정한 出資分을 출자하고 이사회 승인을 득한 자
- (5)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 ① 권리: 조합목장의 사용·수익권
  - ② 의무: 목적 사업의 수행의무  
조합 운영비 부담의무  
기타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으로서 총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의 수행의무
- (6) 조합원의 탈퇴사유
  - ① 특별 출자금 및 조합운영에 필요한 의무금 미납시 자격 자동상실
  - ② 탈퇴의사의 서면제출시
- (7) 임 원
  - 조합장 1인, 부조합장 1인, 이사 8인, 감사 2인, 고문 약간명, 총무 1인

위 組合은 1931년 10월에 設立된 후 '68년 2월에 再設立되었으며, '91년 6월말 현재 組合員數는 170명이고 조합장직은 61세의 李精一(농업, 중졸)씨가 맡고 있다. 그가 제공한 공동목장 정관의 사본은 아래와 같다.

共同牧場是也

山東省畜牧總局

山東省畜牧總局



Handwritten notes in the top right corner, including the number '72-1506'.

Handwritten signature and date at the bottom right: '李哲為子 1970.12'.

中國共同收場組合建設

第一章 總則

第一條 (目的) 本組合以中國共同收場組合之組織及活動

第二條 (活動方針) 本組合以中國共同收場組合之組織及活動

第三條 (區域) 本組合以共同收場組合之組織及活動

第四條 (組織) 本組合以共同收場組合之組織及活動

第五條 (經費) 本組合以共同收場組合之組織及活動

第六條 (附屬) 本組合以共同收場組合之組織及活動

第七條 (附屬) 本組合以共同收場組合之組織及活動

第八條 (附屬) 本組合以共同收場組合之組織及活動

得地者

第五條(目的) 本組は、協同的自治精神を發揮し、牧場を

健全に發展し、畜産技術を普及し、俱に畜産の増進を圖

謀るを目的とし、

第五條(事業) 本組は、前條の目的を達成し、以下の事業を執行

し、

一、共同牧場運営の企画と調整

二、管理の決定

三、牧場の開闢と改良

四、畜産の共同防衛

五、畜産の購入

六 高產技術 員若干名

七 其他非復員之目的達成之遠行 員若干名 必要時可業

第二章 職員

第一條 職員之職責如下 職員若干名

組長一人 副組長二人 理事八人 監事三人

顧問若干名 總務一人

第二條 職員之選任 一 組長 副組長 理事 監事之總務員

由該會之顧問及總務員中推戴之 總務之職員由該會

外 諸股業務之執行 由中 一

第三條 職員之任期 一 職員之任期 由中 一



但 缺員及 休員是 理事 之 會 則 亦 送 出 部 會 休 員 外 殘 任 期 日 之 事 也

第十條 ( 役員 之 報酬 ) 役員 之 日 費 取 得 之 事 亦 可 也 總 會 之 議 決

以 外 報 酬 是 支 付 部 會 之 事 也

但 總 會 長 之 任 命 也 報 酬 是 有 給 之 事 也 亦 可 也

第十一條 ( 役員 之 任 務 )

一 總 會 長 之 任 務 是 代 表 部 會 之 任 務 是 總 務 也 亦 可 也

二 副 總 會 長 之 任 務 是 輔 佐 總 會 長 有 故 時 業 務 是 代 行 也 亦 可 也

三 理 事 之 任 務 是 理 事 會 之 中 是 教 訓 是 世 事 項 是 審 判 議 決 定 也

以 前 條 之 中 報 酬 業 務 財 務 則 對 於 部 會 也

第十條 總 會 之 任 務 會

第十二條 (總會) 本組合總會之定期總會外臨時總會之召集

定期總會之每年一回或月別召集以外 臨時總會之召集

必要時或認為臨時總會召集之以上召集之要求時之組合長也

第七條 本總會之召集由本會

第十三條 總會決議決定之 總會之在召集組合員過半數以上出席

出席者之數之出席者組合員過半數以上出席者以上決議決也

但一次二次或召集未達時之三次召集時出席者組合員之決議決也

第十四條

第十五條 (臨時總會) 本組合之臨時總會之召集由組合長召集

長可召集在臨時總會 臨時總會之召集由組合長召集

本組合之召集由本會決議決也

第十五條 總會之下設事項會議決如下

一 歳入・歳出・決算 以決算

二 基金財産の 取得以処分

三 定款の 変更

四 組合長・副組合長・理事 監査員選出

五 其他總會の 必要事項 以決定以決算

第十六條 理事會之下設事項會議決如下

一 總會の 付議事項 以決算

二 總會の 会計委任事項 以決算

三 組合員 賦課率 以徵收方法

四 其他業務執行 以副知事 以決算

第十七條 組合の 収入及支出 記帳入呈 是充當知事

一、基本財產收益

二、組合員手續費

三、業務收益

四、附屬及其他收入

此項十八條，組合員手續費、組合運轉費用、無效費用、責任担保費、

此項九條，組合員手續費、入會費、退會費、會費、

此項三條，有組合員手續費、退會費、會費、

此項五條，有組合員手續費、退會費、會費、

一、組合員名單

二、組合員名單

三、現金出納簿及原簿

四、基本財產台帳

五 財産目録

簿 四章 畜田生官項

比身三三條 在組合牧場の牧草等 條有以之得之非組合員の畜牛之入牧則  
第六以外

比身三三條 畜田生官項 之恒常 至其良地之管理 是れは以て故息口之 重大に過失を

因に畜田の 敬死 其條の 諸事 之理 由りて 青年 任事 則り 於て

天地之變 其 汚濁 男 遺失 之 因に 被害 之 組合員 管理 介

責任 之 則り 以て 故息 逸 走 時 之 畜田 則り 即ち 連絡 等 協助 則り

諸難 時 之 組合員 之 積極 的 協助 則り 調査 則り 任事 則り 也

附 則

比身 一 條 組合員 之 死 之 時 之 自 動 消 滅 相 續 人 之 長 男 之 限 外

比身 二 條 組合員 之 特 別 出 資 金 毀 滅 務 人 金 之 納 付 則り 是 等 之 自

勸的三三組合員外資格三表與沙中

第三條組合員自願退出不叫之 上趣首言善向三提出外三三付

請轉呈表與沙中

此等四條原是徵之二號三九之八年六月廿五日予訂施行也

署在名入

(8) 共同牧場의 所有權紛爭 概要

위 조합의 공동목장구역인 임야는 원래 자연부락인 中文里가 1919년 7월 10일 임야조사령에 따라 중문리名義로 査定받은 중문리민의 總有財産이었는데 '61년 9월 1일 시행된 지방자치 등에 관한 임시조치법 8조에 의해 중문리가 南濟州郡에 귀속되어 郡의 소유로 되었다가 '81년 7월 1일 行政區域變更으로 중문리가 西歸浦市에 편입됨으로써 서귀포시의 소유로 되어 버렸다. 이에 중문리 공동목장조합은 '88년도에 서귀포시를 상대로 時効取得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1·2審에서는 勝訴하였으나 大法院에서 당사자가 적격치 않다(목장조합은 里 자체와는 다르다)는 이유로 破棄還送되어 다시 訴訟을 치르게 되었다.

리의 행정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민의 공동편익과 공동복지를 위하여 주민을 구성원으로 한 공동체를 구성하고 행정구역인 리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재산을 공부상 그 이름으로 소유해 온 경우에 이러한 공동체는 非法人社團으로서 그 재산은 里주민의 總有에 속하고 행정구역인 리가 地方自治法이나 地方自治에 관한 臨時措置法 등의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인 面 또는 郡의 소속기관이 변경되거나 행정구역변경으로 市에 편입되었다고 하여도 里주민의 總有인 재산이 面이나 郡 또는 市의 소유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大法院 1991. 11. 26. 제1부판결 91다 20999 所有權 移轉登記)

어떻든 이제 중문리공동목장조합은 舊中文里를 상대로, 다시 舊中文里를 대신해 西歸浦市를 상대로 하여 2重의 訴訟을 치르게 된 것이다.

나. 河源洞과 廻水洞의 경우

면담내용<sup>1)</sup>을 중심으로 하여(관련 定款은 구할 수 없었음) 河源·廻水 共同牧場組合의 入會關係의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보기로 한다.

河源洞共同牧場組合

(1) 공동목장 조성경위

1936년(昭和·11년)도에 부락민 150여명이 各人 1정보씩의 임야(임야 없는 사람은 금전으로 충당)와 노동력제공(勞力제공 못한 자는 땅을 더 내놓든지 금전을 더 내 놓았음)으로 당시 200정보(국유지 20정보 포함)의 공동목장이 조성되었다 한다.

26) 하원동 공동목장조합의 내용은 하원동공동목장조합장 강상홍(61세)씨와 하원동 노인회장인 강용규(65세)씨의 진술을 토대로 하였으며, 회수동의 경우는 노인회장 이정실(74세)씨의 제보내용을 토대로 하였다.

## (2) 공동목장 운영상황

'92년 6월 현재 조합원수는 223명으로서 하원동 전체가구의 2/3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나 소를 키우는 농가수는 불가 40여 가구이며, 목장의 운영도 이 농가들의 입식료(두당으로 계산)를 받아서 세금, 비료, 철조망 보수, 관리인 수당(보수) 등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

현재 입식두수는 150두 정도가 되나 成牛는 100여 두에 불과하여 입식료에 의존한 목장운영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다(따라서 공동자금도 거의 없고 매년 입식료에 의한 운영에 의존하고 있음).

'91년부터 道指定 示範牧場이 되어 매년 개간비 등의 명목으로 지원금을 보조받고는 있으나 목장지형이 비탈이고 가시밭이 많아서 트랙터를 이용한 개간만으로는 초지조성이 불가능하고, 작년에 선택형 제초제인 "반벌"이란 농약으로 1ha정도의 초지조성을 시도해 보았으며, "가시나무" 등의 제거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 금년에는 20ha정도 시도해 볼 예정으로 있으나, 정부의 허락만 있으면 방화선을 구축하여 3년에 1회 정도의 방화물 실시해야 초지조성이 잘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3) 조합원 신규가입문제

조합 설립 당시 150여명에서 '92년 6월 현재 223명이 된 것은 15년전(1976년도 전후)에 1회성으로 신규가입비 5,000-7,000원씩 받고 가입을 시켰기 때문이라 한다(당시 그 정도의 돈이면 1,000坪 정도의 땅을 구입할 수 있었다 한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신규가입이 없었으며, 현재 정관상으로는 부락민에 한하여 신규가입이 허용되고 있으나 지가상승 등으로 인하여 실제상으로는 신규가입은 매우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고 한다(가입조건은 매년 정기총회에 일임하고 있다 함).

## (4) 목장 등기문제와 共同牧場의 所有權紛爭 概要

처음에는 등기없이 조성 → 조합장 일인 명의 등기 → 조합장의 9인 명의 등기 → '70년대초 특별조치법을 통해서 공동목장 명의로 이전등기가 되었다. 다만 목장구역 200정보중 20여 정보는 국유지라는 이유로 국유화되어 버려서('61년 9월 1일 시행된 지방자치 등에 관한 임시조치법 8조에 의해 하원리가 남제주군에 귀속되어 마을 공동소유에서 當該 남제주군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었다가 '81년 7월 1일 행정구역변경으로 하원리가 서귀포시에 편입되어 지난 '82년 3월에 서귀포시가 소유권을 승계했었다), 이 땅 20여 정보를 되찾기 위하여 하원동 마을회가 서귀포시장과 남제주군수를 상대로 마을공동목장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하여 '93년 8월 4일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목장용지(67,970여평)는 하원동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리의 개념은 행정부산하기관으로서의 리가 아니라 주민 전부를 구성원으로 하고 있는 非法人社團인 리이므로, 지방자치법의 시행에 따라 리가 지방자치단체인 面 또는 郡의 관할기관이 되었다 해서 리 소유재산이 面 또는 郡의 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

(濟州地法 1993. 8. 4, 92 가단 7800; 法律新聞 '93. 8. 16, 7면 참조)

(5) 비조합원(他洞住民 포함)의 입식문제

이 문제에 대하여는 완전히 개방하고 있으며, 입식료의 부담도 조합원과 동일한 액수라고 한다. 입식료에 의한 조합운영이 되고 있어서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한다.

(6) 기 타

한편, 조합원중 소를 갖지 못한 180여가구는 명목상의 조합원일 뿐이며, 실제로 조합비를 내거나 노력동원에 거의 참여치 않고 있다 한다(목장, 땅만 빌려주어도 좋은 것이지 조합운영비가 지 내면서 타인의 소를 입식시키느나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라고 한다). 그러나 목장의 소유권에 대한 인식은 높아서, 가령 목장내에 도로가 개설되는 등의 이유로 보상금이 나왔을 때는 모든 조합원들에게 持分(金)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한다.

**廻水洞共同牧場組合의 概要**

(1) 지금부터 약 60여년전 그 당시 105호 가구중 70여 가구주(명)의 발기에 의해 각인 2원(10냥)씩 각출하여 회수에서 북쪽으로 3.5km 지점에 위치한(지금의 제2횡단도로를 중심으로 회수에서 한라산을 바라볼 때 서쪽지점) 산 1번지에서 33번지에 이르는 30정보의 임야를 매입하여 목장을 조성하였다.

(2) 그 당시는 목장 관리인 1명을 두어(유급제로서 소 1두당 보리 다섯되씩 주었다) 목장을 관리하였으며, 비조합원의 입식도 허용하였으나 관리비는 조합원 보다 2배 정도 더 많이 내었다 한다.

(3) 조합원이 他洞(里)으로 이주하여도 원하는 한 입식이 허용된다.

(4) 현재 조합원수 72명에 조합장은 61세의 이영필(중졸, 농업)씨가 맡고 있으며, 목장 땅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령 "에멘경마장" 부지의 반은 회수(리) 공동목장조합 땅이라고 한다.

## 2. 共同漁場 入漁關係

대포동과 색달동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 가. 대포동의 입어관계

어촌계장 원규환(62세)씨와 해녀회장 양시선(41세)씨와의 면담내용을 토대로 하여 몇 가지 사항을 알아 본다.

#### (1) 공동어장 구역(대포동 바다경계)

월평동 머내에서 중문동 지사캐 사이의 바다로서 행정구역상의 洞(里) 경계와 같다.

#### (2) 어촌계의 구성

어촌계원은 '92년 6월 현재 84명으로서 잠수(해녀)가 60명으로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세대당 1명 이상의 계원이 있는 세대는 거의 없고, 남자든 여자든 1명만 가입하도록 자체조정이 되고 있다. 잠수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20대는 全無하고 30대 후반 20명 정도, 40대가 주종이며 50대는 3-4명 정도라고 한다.

#### (3) 금채기

소라 : 매해 6월 1일-10월 30일

전복 : 10월 1일-12월 31일

성게 : 6월 1일-10월 30일('93년 부터는 7월 1일-9월 30일로 할 예정)

(※ 천초 : 연중 금채하다가 5월경에 공동채취, 공동분배

    룻 : 연중 금채하다가 3-4월경에 공동채취, 공동분배)

금채기 중, 특히 보호구역의 보호를 위하여 감시원(유급) 1명을 고용, 상주시키고 있으나 언제나 상주, 감시하는 것은 아니고 물기 때에만 상주하고 나머지는 생업에 종사토록 하고 있다.

#### (4) 판매방식

소라는 99% 공동판매(수협을 통한 입찰)되는데, 어촌계 자체에서 수집대행인을 지정, 수협으로 물건을 수송하여 입찰판매한다. 전복도 이와 같으나 私賣買도 이루어진다(30% 정도).

※ 활소라는 '70년대 초부터 수협단위조합별로 가격을 정하여 (입찰)판매, 對日輸出하여 오다가 10년전부터 수협중앙회에서 일괄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였으나, 근년에 이르러 다시 단협별로 입찰·가격을 정하여 판매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 (5) 양식장

공동양식장은 없고, 개인적으로 양어장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대포수산(김경식), 대해수산(박종

범) 두 곳이 있으나 어촌계와는 무관하며, 다만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새끼 소라 양식 등을 하고 입어를 통제하고 있는 정도이다(이 경우는 수협에서 매년 일정액의 예산을 지원 받고 있다 한다).

(6) 입어제한

어촌계원이 아닌 자에 대한 입어는 완전히 통제하고 있으며 특히 보호구역내에서는 보말잡는 것도 통제하는 경우가 있다(그 이유는 돌을 마구 뒤집어 놓으면 소라 등의 생육에 지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인근부락 부락민의 입어도 완전 통제하고 있다. 다만 이웃마을인 강정동(강정어촌계)의 경우에는 실제로 법환 일부지역(썩은섬 부근)에서 부터 월평동 지역 거의 전부를 관할하고 있어서 법환리민 또는 월평동민의 일부입어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모든 사람에게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옛부터 관행상 입어해 온 해너들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 경우에 계원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금채기가 아닌 경우에 입어할 때 같이 입어를 허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한다.

대포동의 경우 입어문제로 인한 인근부락민과의 분쟁은 없었다 한다.

나. 색달동의 입어관계

여기에서는 강규상(66세)씨와 임춘심(해너회장 겸 임시 어촌계장, 41세)씨와의 면담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알아 보기로 한다(부분적으로는 중문동과 색달동을 포괄하고 있는 천제어촌계의 관계도 언급하기로 한다).

(1) 공동어장 구역(색달동 바다경계)

천제연 남쪽 속칭 주옛바당(들렁과 앞 바당) 동쪽 끝에서 예례동 패수처리장 남쪽 속칭 셋바루 바당 서쪽 끝까지이며, 특정의 자연석으로 경계표시가 되어 있다.

(2) 어촌계의 구성 및 권리 의무

어촌계는 주로 해너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92년 6월 현재의 계원은 해너 30명이다. 최연소 해너가 38세이고 최고령 해너는 69세라고 한다.

한편, 현재 색달동 독립어촌계는 없다(서귀포시에 중문면이 편입되면서, '87. 7. 1 서귀포시 당국의 요청에 의해 색달동어촌계가 중문동어촌계와 통합, 천제어촌계로 되었기 때문이다).

천제어촌계의 가입조건은 주소지가 중문(1·2·3동), 색달동이면서 소정의 조합비를 내면 된다 한다.

어촌계원이 되면 어장관리의 의무 조합비 부담의무 산란작업 의무 등을 부담하며 각종의 入漁權을 갖게 된다.

(3) 금채기

소라 : 매해 11월 1일-5월 30일

전복 : 12월 1일-2월 28일

성게 : 매해 4월 1일-6월 30일(그 외의 기간이 채취기가 된다)

(4) 판 매

소라, 전복, 성게, 톳 등은 수협을 통한 공판 출하가 보통이고 오분자, 문어는 관광객 상대의 노점판매가 주류를 이룬다 한다.

이로 인한 수익은 색달동 전체 190여가구(호) 중 어촌계원으로 있는 30여호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한다.

(5) 입어 제한

색달리 공동어장은 부락에서 1.5km가량 떨어져 있는데, 여기에 이르는 도로 개설·보수시 계원 외의 주민의 노력(勞力)제공이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계원 이외의 부락(동)민의 입어를 통제하고 있으며, 해너 아닌 자는 보말도 잡지 못한다고 한다.

한편 최근에 중문동 일부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어장파괴로 인해(색달동측의 주장임) 색달 해너들과 이들 사이에 분쟁이 있었고 그것은 천제어촌계의 분할요구의 하나의 이유가 되기도 했다 한다.

(6) 기 타

과거 고구마 표종·밀감나무의 거름으로 바다에서 서식하는 "뽕"을 사용했던 때에는 주민전체가 바다(공동어장)에 대한 권리의식이 강하였으나 약 15년 전부터는 해너들만이 바다를 관리하고 있는 상태라 한다.

(7) 천제어촌계의 분리·분합 문제

중문, 색달 어촌계가 통합된 형태인 천제어촌계는 '92년 하반기 중에 분리, 분할될 전망이다 한다. 그 원인은 중문동과 색달동이 공동으로 어장을 관리하고 있는데서 발생하게 된 다음과 같은 제반문제점이 노출되었기 때문이라 한다.

- ◎ 중문동과 예래동간의 행정절차상의 문제
- ◎ 사업관계에 대한 어장투자액 있어 중문·색달주민간의 의견 대립
- ◎ 중문동 주민 중 '비어촌계' 사람들에 의한 무분별한 어장파괴로 인한 색달어촌계(해너회)

측의 문제 제기

- ◎ 최근 (株)성안관광이 관계당국에 신청, 허가를 득한 「로얄마린파크 마리나」 시설사업 내용중 쾌속보트의 왕래로 인한 사고 위험과 공사중 수면 밑 진동으로 인한 어획물 감소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천제어촌계가 강구하지 못했고, 어장영향평가(사업시행자측에 의한) 결과를 토대로 사업자측에서 천제어촌계에 1억 2천 8백만원을 보상하겠다는 구두약속만 되어 있는 것도 어장 분할요구의 큰 이유가 된다고 한다.

3. 其他

가. 廻水洞<sup>27</sup>의 경우

(1) 회수동 공동우물의 개요

- ① 회수동에는 땅을 파서 만든 우물인 “이레샘”[일명 칠일천(七日泉)]과 생수(나는 물)인 “동수”가 있었다.
- ② 이레샘은 회수부락민만이 관리·사용하였으나, 동수는 회수·대포·하원리 마을 가운데(우물 1km 근방에 3개 마을이 소재하고 있었다) 있어서 3개 부락민이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 ③ 마을 주민 전체가 자발적으로 물팡(شط곳)도 만들고 깨끗이 청소도 하고 뱀같은 것이 죽어 있으면 치우는 등 공동으로 관리하였다.

(2) 鄉 約

- ① 회수리 자치규약의 일형태인 향약은 문서화되지 않았으나, 몇가지 口傳되는 내용을 보면, 초상집·경사난 집에 가서 도와 주도록 하였고 특히 화재가 난 집에는 쌀 한 홑과 목재 하나씩(회수부락은 나무가 아주 귀했다 한다) 각 가구에서 거두어 갖다 주었다.
- ② 부랑아가 있을 경우 명석에다 싸서 불기를 때려 그 버릇을 고치도록 하였다.
- ③ 위의 자치규약의 양태들은 4.3사건 후 거의 없어지게 되었다 한다.

나. 月坪洞<sup>28</sup>의 경우

(1) 鄉 約

- ① 예로부터 내려오는 향약의 내용중 몇가지를 보면, 싸움을 하면 매를 몇대 맞았고 영장 밭에 안가면 쌀을 내었으며 툇을 조금 거두고도 많이 거두었다고 하면 매를 맞았다(해너규약).

27) 提報者 : 회수동 거주 74세의 이정철씨.

28) 提報者 : 월평동 거주 47세의 강상필(里長역임)씨.

② 다른 부락에서 이주해 오게 되면 入洞禮를 내야만 마을 호적에 등재되었다.

※ 현존하는 자치규약으로서 入洞禮와 洞接禮가 있는데 그 중 몇가지를 보면,

① 마을 입주시 일정금액으로서의 입동례를 내야만 洞民의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91년 12월 동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月坪洞 鄉約 제2조 참조). 그 금액은 리(마을)개발위원회에서 결정한다(同 鄉約 15조 4호).

② 결혼하게 되면 일정금액으로서의 동접례를 내야 한다. 그 금액은 리(마을)개발위원회가 정하게 된다(同 鄉約 15조 4호).

③ 입동례, 접동례 금액은 월평리(동) 마을 공동예산이 된다.

## (2) 월평동 향약

'91년 12월 동민총회에서 제정된 全 4章 本文 25條 附則 3條로 된 새로운 월평동 향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월평동 향약

## 제1장 총 칙

### 제1조 목적

본 향약은 월평동(마을) 자치행정을 규범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모든 동민의 복리증진과 민주적 발전과 소득증대 사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동민의 요건

동민의 요건은 월평동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자를 동민으로 간주하고 신규전입자는 入洞禮를 납부한 후부터 동민으로 간주한다. 단, 입동례 납입금액은 매 회계말 개발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3조 자치 행정

본 향약에서 자치 행정이라 함은 순수한 향약행정과 타 단체에서 위임한 행정을 말한다.

### 제4조 사무소 소재지

본 동사무소는 서귀포시 월평동 419-1번지에 둔다.

### 제5조 권리와 의무

본 동민은 누구나 동 운영에 참여 및 공동시설·공동물품을 이용할 수 있고, 동 운영비 납부 및 노력동원에 참여하여야 한다.

## 제2장 의 결 기 관

### 제 6 조 의결기관

본 동의 의결기관으로서 총회와 개발위원회를 둔다.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회계년도 종료후 30일 이내에 개최하여 동장이 의장이 된다.
2.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 동장이 소집한다.
  - 가. 동장이나 개발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나. 동민 15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다. 나 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 동장은 소집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 제 7 조 감사의 공고·소집권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사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1. 동민 15인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어도 동장이 이를 이행치 않을 때.
2. 감사가 회계와 재산관리 상황 및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을 발견하여 신속한 보고를 요구할 때.
3. 위 상황일 때는 감사가 총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 제 8 조 동민 대표의 총회 소집권

동민 대표는 동민의 요구가 있어도 동장이 소집하지 않을 경우와 감사가 총회를 개최할 요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집을 회피했을 때 동민대표가 소집권을 갖고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제 9 조 총회 개최 통지

1. 총회 개최 3일전 회의목적, 일시, 장소를 게시·공고하고 연일 방송한다.
2. 반장은 회의 당일 반원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제 10 조 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예산 및 결산 승인
2. 향약의 개폐
3. 공동재산 취득 및 처분
4. 현금의 부가 및 징수
5. 사업계획 승인
6. 개발위원 및 감사 선출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 11 조 총회의 개최와 의결정족수

총회는 다음 각호에 의거 개최하고 의결한다.

1. 총회는 만 20세 이상 주민 30명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의장은 표결권과 가부 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갖는다.
3. 총회를 소집하였으나 성원 미달로 불개회시에는 1차 통지와 같은 방법으로 재소집하고 3차까지 소집하였으나 성원 미달시는 참석인원수로 총회를 개최한다.
4. 의장은 3인 이상이 서명한 회의록을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5. 서기는 사무소 직원으로 한다.

제 12 조 개발위원회

동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위원회를 둔다.

1. 마을의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및 추진과 새마을 사업 등을 관장한다.
2. 개발위원회는 동장과 위원으로 구성하며 본 위원회의 의장은 동장이 된다.
3. 본 위원회는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의 의식구조 개선 및 소득증대 사업 등을 위하여 동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 13 조 개발위원회 위원의 구성

1. 동장, 청년회장, 부녀회장, 각 작목반장, 감사 2명, 직·전직동장 2명, 일반 2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임기는 자생단체장인 청년회장, 부녀회장, 각 작목반장은 재직기간으로 한다. 단, 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14 조 개발위원회 개최 및 의결정족수

본 위원회는 재적인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5 조 개발위원회의 임무

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처리한다.

1. 예산 및 결산 심의
2. 마을 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3. 총회에 부의할 사항
4. 入洞禮 및 洞接禮 금액 결정

제 16 조 감사

1. 본 동의 행정업무를 감사할 감사 2인을 둔다.
2. 감사는 년 1회 이상 동 행정 제반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며 총회 때 보고하여야 한다.
3.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결원시 보원은 1명일 때는 개발위원회에서 한다.



제3장 집행부

제 17 조 동장

본 동에는 마을을 대표할 동장 1인을 둔다.

1. 동장은 마을을 대표하여 단체협약권과 교섭권 및 총회 소집권을 가지며 총회에서 인정하는 타 단체장도 겸직할 수 있다.
2. 동장은 모든 정규회의의 의장이며 가부동수일 때는 동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3. 동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 가. 수입 지출의 집행
  - 나. 일반 사무처리
  - 다. 각종 문서의 기록 및 보관
  - 라. 의결을 요하는 안전 제출
  - 마. 총회 및 개발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의 집행
  - 바. 각종 재해로부터 주민과 재산 보호
  - 사. 연중 주거환경 청결 유도

제 18 조 동장의 임기

동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총회에 의하여 또는 마을주민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1. 주민투표의 경우에 투표권은 세대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중 만 20세 이상인 자 1인에게 부여한다.
2. 동장이 결위되고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때는 개발위원중 1인이 대행할 수 있으나 1년 이상일 때는 재선출하여야 한다.
3. 동장이 질병, 출타, 기타 사유로 인하여 회의 집행이 곤란할 때는 개발위원중 1인을 선정하여 집행케 할 수 있다.

제 19 조 보조 및 하부기관

동장은 사무보조자로 서기 1인을 두며 반장을 둔다.

1. 반장은 반에서 추천하며 명예직으로서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반장은 반을 대표하며 동사무소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반원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한다.
3. 동장이 동 운영상 필요를 요할 때 반을 재편성할 수도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동 서기는 동장의 보조자로서 각종 장부를 기록 및 정리하고 동장의 지시에 따라 동사무소 업무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마을 주민을 상대로 한 상행위를 할 수 없다.
  - 가. 동 서기는 유급제로 마을 일반예산의 범위내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한다.

## 제 4 장 재 정

### 제 20 조

동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매년 총회의 결의에 따라 동 운영비를 부담한다. 단, 재정충당은 동 운영비와 찬조금 및 잡수입으로 충당한다.

1. 동 운영비는 납세 의무자가 자진하여 납부 통지서에 의거하여 동사무소에 납부한다.

### 제 21 조

본 동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1. 일반회계는 순수한 마을 행정운영비를 말하고 특별회계는 각종 지원금과 타처로부터의 지원금을 말한다.
2. 특별회계 및 찬조금은 총회 또는 개발위원회의 결의를 얻고 집행한다.
3. 이월금은 사업준비금으로 귀속시키며 예치금 이자는 자금별로 귀속시킨다.
4. 현금 수증보관은 100,000원으로 한다.

### 제 22 조 예산의 집행

1. 동장은 예산집행에 앞서 먼저 사업의 완급을 가려 집행하고 예산내 집행을 원칙으로 한다.
2. 각종 계약체결은 감사 1인, 개발위원 약간명을 입석시키고 해야 한다.

### 제 23 조 예비비

1. 예비비 사용은 개발위원회의 의결을 얻고 집행한다.
2. 예비비는 당해년도 일반예산의 5%로 한다.

### 제 24 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2월 31일로 한다.

### 제 25 조 본 항약에 미비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 부 칙

### 제 1 조 시행일 및 시행준비

이 항약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항약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항약 시행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제 2 조 효력

1. 이 항약의 시행전 동장은 전 규정에 의하고 개발위원은 신 항약에 의하여 선출한다.
2. 이 항약에 의하여 선출된 자의 임기는 이 항약 시행일로부터 계산한다.

### 제 3 조 이 항약은 1992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V. 結 語

사람의 社會的 삶은 자연에 대한 順應과 人間集團에 대한 適應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地域共同體의 慣習 法意識 自治規範도 이러한 맥락에서 본 삶의 方式의 一形態에 다름아닌 것이다.

여기에서는 앞에서 파악해 본 내용 중 몇가지 사항을 要約함으로써 本稿의 마무리에 같음하고자 한다.

우선 이 지역에서 살았던 先人들의 삶의 秩序로서의 慣習實態를 보면, 部落民間(親族사이)의 다름은 小集團(마을共同體)의 지도자인 마을有志나 門中會議 등의 和解, 仲裁에 의해 紛爭을 자치적으로 해결하는 일종의 司法慣習의 一形態를 발견할 수 있다(다만, 陸地部 傳統社會에서 溫存하였던, 마을寸長과 有志 등의 合意에 의해 처리되었던 黜鄕의 存在與否는 분명치 않다).

家族慣習의 경우에는 代諾婚, 分家主義家族慣習, 長子優待의 共同相續과 先代의 債務에 대하여 자식이 無限責任을 부담하는 單純承認의 相續慣習 實態 등을 파악할 수 있었고, 나아가 祭祀奉行의 댓가로서의 祭物田(祭位土)은 원칙적으로 長子(孫)에게 상속되어진 사실에 미루어 볼 때 嫡長子承繼主義가 溫存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오늘을 살아가는 이 지역주민들의 規範的 價値觀인 일단의 法意識과 현존하는 몇가지 自治規範의 一瞥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合理性의 일면을 발견할 수 있었다.

끝으로 本稿는 民族學的 法學(ethnologische Jurisprudenz)의 視角에서 中文 一部地域(마을)共同體의 法規範의 大綱을 파악(발견)해 본 것으로서 그 事實關係만을 指摘(記述)하였을 뿐 그것의 客觀的 分析으로서의 說明은 가능한 하지 않았으므로, 향후 이들에 대한 補完·說明을 해야 할 課題를 남기고 있음을 밝힌다.